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594호
- 다. 제 출 일 : 2026년 3월 30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3월 3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적: 대지면적 1,070 m^2 , 연면적 11,752 m^2
- 목적: 국제기구 활동 지원
-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 재산관리관: 외국인이민담당관(건물), 주차계획과(토지)

나.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공유재산 사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빌딩 13층 1호)
- 면적: 토지 24.36 m^2 , 건물 267.37 m^2
- 목적: 국제개발협력단(SH 산하조직) 비영리 사업 수행(사무공간)
- 당사자: 〈허가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 〈수허가자〉 서울국제개발협력단
- 허가기간: 2025. 1월 ~ 2026. 12월(2년)
- 무상사용기간: 2026. 5월 ~ 2026. 12월(8개월)
- 예상 감면액: 총 62,037천원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지방공사에 해당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정책공유 등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함
- 또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

※ '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심 의 일: '26. 3. 12. (목)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재산관리과-3468, '26. 3.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서울국제개발협력단¹⁾이 서울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²⁾ 건물 일부³⁾를 무상 사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공유재산 및 사용현황(서울글로벌센터빌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⁴⁾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종로구 종로38(서린동 63번지)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지상15층, 지하4층, 연면적 11,752㎡)을 운영 중이며 건물과 토지 재산관리관은 각각 외국인이민담당관과 주차계획과로 구분되어 있음

1)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속 부서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및 정책공유 등 비영리 공익사업 등 관련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대행사무 현황

○ 대행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민간위탁 혁신계획(市 조직담당관-8252호, '16. 6. 30.)
- 대행사업 전환추진계획(市 해외도시협력담당관-8825호, '16. 10. 12)

○ 사업비 : 3,401백만원 (2026년 사업비) (대행기간 : 2022.1.1.~2026.12.31. (5년))

○ 인력구성 : 33명(일반직 24명, 축탁계약직 9명)

(단위 : 명)

계	일반직											축탁계약직
	소계	총괄	사무	설비				미화	설비	보안	안내	미화
				전기	통신	기계	건축					
33	24	1	2	1	1	1	1	1	9	6	1	9

3) 위치/면적 : 서울글로벌센터(지상 15층, 지하4층, 연면적 11,752㎡) 중 13층 267.37㎡ (전용면적 139.10㎡) 사용 (불임1, 빌딩 입주현황)

4)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② ~ ⑥ (생략)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

	빌딩	토지	
'13.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문화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신축
'14. 2.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14.11.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5. 1.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관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7. 7.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19. 1.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21. 8.			
'22. 9.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		
'23. 7.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4. 1.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금융투자과		
'24. 7.	글로벌도시정책관 <u>외국인이민담당관</u>	<u>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u>	현재

- 서울시는 빌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⁵⁾에 따라 2021년 12월⁶⁾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간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현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는 총 21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국제개발협력단⁷⁾은 13층에 267.37㎡(전용면적 139.1㎡)의 면적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음(붙임1)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 ⑦ (생략)

6)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재대행 추진계획, 2021.12.23. (국제교류담당관-4315)

7)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2026년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운영계획, 2026.1월 (국제협력담당관-335)

- 서울국제개발협력단 ((SUSA :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 조직 체계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에서 명칭 변경('23.7.)

- 사업내용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G2B)

- 해외도시 사업정보 수집·분석 및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정책상품 현지화 및 종합적 사업기획·제안 등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공유재산(행정재산)⁸⁾ 목록 〉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이용현황
토지	종로구 서린동 63	1070.80 중 24.36	1,411,175	62,037	행정재산	주차계획과	대지
토지	종로구 종로1가 93				행정재산	주차계획과	대지
건물	종로구 서린동 63 외1	267.37	318,790		행정재산	외국인이민 담당관	업무시설

- 2016년 3월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⁹⁾에 따라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의 유상 사용을 최초로 허가¹⁰⁾ 받고 2017년 12월까지 사용료를 납부¹¹⁾하였음(총액 127백만원)
- 2017년 2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재산관리관인 해외도시협력관은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¹²⁾을 통해 2018년 1월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2025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붙임2)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¹³⁾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¹⁴⁾에 따라 시의회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2016.2.29.

11) '16.3.~'17.3. 사용료 69,195,720원, '17.3.~'17.12. 사용료 58,052,720원

- SH공사가 공단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우리시가 이 사용료를 SH공사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사업비로 다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12) 2017.2.23. 법률자문담당관, 법률자문 의견서, 서울시 공유재산 수탁기관 사용 관련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동의를 경우에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나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토록 했다는 점은 행정 절차를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2월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 공간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계획¹⁵⁾을 수립하고 2026년 3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이후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 (조건부 적정)¹⁶⁾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은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중 13층 267.37㎡(전용면적 139.1㎡)로 기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기간 중 이번 동의안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완료 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무상 사용기간으로 2026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8개월 사용료 62백만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 5. (생략)

⑥ · ⑦ (생략)

15) 2026.2.13., (외국인이민담당관-1736)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국제개발협력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

16) 2026.3.23., (재산관리과-3468)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국제협력담당관) “조건부적정”
- <조건사항> 지방공사에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

〈 공유재산 심의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개요 〉

○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 목적 및 용도 : 서울국제개발협력단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사무공간)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63외 1필지, 13층 1호
- 사 용 면 적 : 〈토지〉 24.36㎡ 〈건물〉 267.37㎡
- 당 사 자 : 〈허가부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교통실 주차계획과
〈수허가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국제개발협력단)
- 허 가 기 간 : '25.1. ~ '26.12. [2년] ※ 최초 허가일자 : 2016. 3. 4.
- 무상사용기간 : '26.05. ~ '26.12. [8개월]
- 기 준 가 격 : 〈토지〉 1,411,175천원 [개별공시지가 57,930,000원 × 24.36㎡]
〈건물〉 318,790천원 [㎡당 시가표준액 1,192,317원 × 267.37㎡]
- 감 면 액 : 연간사용료 93,055,028원/갱신 [갱신작전 연간 사용료(86,505,460원) × 해당연도 재산가액
(1,729,964,596) ÷ 갱신계약 직전 연도 재산가액 (1,608,203,093)]
(갱신에 해당) → 62,036,685원 감면 8개월('26. 5. ~ '26. 12.)적용
- 감 면 근 거 :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다. 동의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 이번 동의안은 기존 서울글로벌센터빌딩(공공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울국제개발협력단'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¹⁷⁾,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5항제2의2호¹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시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공공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임

-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고 매년 출연금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세입 및 세출의 발생과 국세(부가가치세) 지출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지출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공공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임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 5. (생략)
⑥ · ⑦ (생략)

라. 종합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단이 사용하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번 동의안은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을 받고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사용허가 기간과 무상 사용 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관련 행정 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국세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붙임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입주 현황

(’26. 3월 기준, 단위: ㎡)

	위치	입주기관	공급면적(전용면적)	최초계약	비 고(계약기간 등)	관련부처(부서)
1	15층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749.54(433.23)	2017. 3.	2022. 03. 02. ~ 2027. 03. 01.(5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2	14층	스페인대사관 경제 상무부	475.66(251.99)	2013. 5.	2025. 05. 25. ~ 2028. 05. 24. (3년)	-
3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	273.88(145.09)	2013. 8.	2026. 02. 01. ~ 2029. 01. 31.(3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4	13층	서울국제개발협력단	267.37(139.10)	2016. 3.	2025. 01. 01. ~ 2026. 12. 31.(2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5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3.26(105.74)	-	다문화담당관 수탁기관	서울시 다문화담당관
6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	278.91(145.09)	2018. 4.	2023. 04. 21. ~ 2026. 04. 20.(3년)	국가인권위원회
7	12층	세계은행그룹(IFC,MIGA) 서울연락사무소	431.89(228.8)	2017. 2.	2022. 02. 17. ~ 2027. 02. 16.(5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8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	317.65(168.28)	2022. 8.	2022. 08. 1. ~ 2027. 07.31.(5년)	성평등가족부
9	11층	세계보건기구(WHO) 아·태 환경보건센터	748.68(433.24)	2019.10.	2024. 10. 10. ~ 2028. 12. 31.(4년)	환경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10	10층	시티넷(CITYNET)	420.80(223.45)	2014. 2.	2026. 02. 24. ~ 2029. 02. 23. (3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		공실(’18.6월~현재)	131.25(69.70)	-	ADB 입주 추진(’26년 하반기 내)	-
-		공실(’17.2월~현재)	195.76(103.95)	-	ADB 입주 추진(’26년 하반기 내)	
-	9층	국제회의장	746.68(433.25)	-	-	-
11	8층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235.87(124.37)	2015.10.	2025. 10. 01. ~ 2030. 09. 30.(5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1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265.40(139.94)	2019. 5.	2024. 05. 13. ~ 2029. 05. 12.(5년)	농림축산식품부
13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	242.02(127.61)	2017. 1.	2022. 01. 05. ~ 2027. 01. 04.(5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14	7층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340.52(179.43)	2014. 1.	2026. 02. 04. ~ 2029. 02. 03.(3년)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15		서울투자진흥재단	401.39(211.50)	2026. 1.	2026.01.01. ~ 2030.09.30.(5년)	서울시 금융투자과
16	6층	서울시설공단	151.47(77.52)	2013. 1.	-	-
17		서울투자진흥재단	590.20(302.06)	2025.11.	2025.11.01. ~ 2030.09.30.(5년)	서울시 금융투자과
18	5층	서울글로벌센터	738.45(426.46)	2013. 3.	외국인이민담당관 수탁기관 2025.04.01. ~ 2027.12.31.(3년)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4층		686.84(395.15)	2013. 3.		
19	3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635.88(358.16) 620.90(355.95)	2013. 5.	2026. 02. 01. ~ 2027. 01. 31.(1년)	-
20	2층	우리은행	33.53(19.22)	2015. 6.	2024. 02. 01. ~ 2027. 01. 31.(3년)	-
21		지젯 유한회사	16.83(9.65)	2021. 1.	2024. 01. 06. ~ 2029. 01. 05.(5년)	-

구 분	내 용	비 고
2016.3.~ 2017.12.	2016.2.29.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최초)	유상사용
	- 유상사용기간 / 납부금액 '16.3. ~ '17.3. / 69,195,720원 '17.3. ~ '17.12. / 58,052,720원	
2017. 2.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해외도시협력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2017.1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계획 수립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임대차 갱신계약 협조요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18. 1.~ 2025.12.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위·수탁 협약(변경)	무상사용
	- 무상사용기간 : '18.1. ~ 25.12.	
2026. 1.	- 유상사용기간 / 납부금액 (1차분(4개월), 26.2.27. 납부) '26.1.~'26.4 / 33,308,900원	유상사용
2026. 2.	2026.2.13. 국제개발협력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 수립	
2026. 3.	2026.3.23.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무실 사용료 지급계획 수립	
	2026.3.3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	
※ 서울글로벌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내역 - '16.3. ~ '17.12. (1년 10개월) - '18.1. ~ '21.12. (2년) - '22.1. ~ '24.12. (2년) - '25.1. ~ '26.12. (2년)		